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 검 토 보 고 서



2023. 11.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11. .

경제도시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박왕규 의원 등 6명(이선주, 고명욱, 서보영, 김장관, 강한곤)
- 발의일자: 2023. 11. 3.
- 회부일자: 2023. 11. 3.
- 검토기간: 2023. 11. 3. ~ 11. 7.(5일간)

### 2. 제안이유

-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4차산업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4차산업 기업의 선정 및 지원, 육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4.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4차산업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 조례안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4차산업 기업의 선정 및 지원,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사물인터넷(IoT):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2.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정보통신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기술
3. 빅데이터: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4. 가상현실(VR): 가상현실(VR)은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기술
5. 증강현실(AR):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기술
6. 인공지능(AI):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7. 삼차원프린팅산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
8.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

9. 그 밖에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달서구 관내 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
2. 4차산업 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3. 4차산업 기업 육성 추진 방향 및 시책
4. 4차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4차산업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4차산업 육성 기업의 선정)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4차산업 기업 중에서 육성할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4차산업 육성 기업 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4차산업 육성 기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4차산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교육,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차원프린팅”이란 삼차원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이하 “삼차원 도면”이라 한다)를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삼차원프린팅산업”이란 삼차원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삼차원프린팅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 3. 6., 1997. 12. 13., 1999. 2. 5., 2007. 4. 27., 2008. 2. 29., 2013. 3. 23., 2016. 3. 29.>

1.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製造·加工·組立·再生·改造 또는 修理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의 整備·修理·改造 등 航空機使用者가 그 運航上의 필요로 행하는 作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골공기·비행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3. “우주비행체”라 함은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항공우주선·인공위성·유인 또는 무인우주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4. “관련부속기기류(이하 "機器類"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구성품을 말한다.
5. “관련소재류(이하 "素材類"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6. “항공우주과학기술”이라 함은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지구 대기권 내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과학기술을 말한다.

##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